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1317호
2013년 12월 5일(목)

차 례

【 예 규 】

- 남양주시 정보보호관리체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2
- 남양주시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일부개정지침----- 4

【 고 시 】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고시----- 10
- 왕숙천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11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진건공영주차장)----- 12
- 하천점용허가 고시(2013-지-36호)----- 13
- 하천점용허가 고시(2013-지-37호)----- 14
- 하천점용허가 고시(2013-지-38호)----- 15
- 하천점용허가 고시(2013-하천-47)----- 16
- 하천점용허가 고시(2013-지-39호)----- 17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농3개통 어린이공원)----- 18
-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22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7
- 공유수면점용허가내용고시(와부읍)----- 48
- 공유수면점용허가내용고시(와부읍)----- 49
- 공유수면점용변경허가내용고시(와부읍)----- 50

뒷면에 계속

회 람									
-----	--	--	--	--	--	--	--	--	--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3-306호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2011.5.2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1-157호(2011.6.3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36호(2012.6.21)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195호(2012.9.13)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2-271호(2012.1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3-16호(2013.1.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된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고시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열람 장소 :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재정비과(☎031-590-8753)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3. 12. 5.

남 양 주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지 구 명	유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일원	582,738	증)484	583,222	기성시가지내 노후·불량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을 통해 지금동, 도농동 일대의 동일 생활권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 남양주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484㎡) 증가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

○ 변경사항 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사항 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82,738	증) 484	583,222	100.0%		
택 지	소 계	295,203	감) 1,290	293,913	50.4%	
	주 거	179,272	증)17,645	196,917	33.8%	
	복합용지	46,733	감)17,603	29,130	5.0%	
	상 업	44,832	-	44,832	7.7%	
	근생용지	1,589	-	1,589	0.3%	
	종교용지	4,789	감) 1,332	3,457	0.6%	
	공업용지	17,988	-	17,988	3.1%	
기반 시설	소 계	287,535	증) 1,774	289,309	49.6%	
	도 로	90,570	증) 8,588	99,158	17.0%	
	철 도	33,336	감) 166	33,170	5.7%	
	공 원	60,623	감) 3,074	57,549	9.9%	
	주 차 장	(3,525)	-	(3,525)		
	녹 지	13,378	감) 2,136	11,242	1.9%	
	학 교	81,859	-	81,859	14.0%	
	미래용지	5,469	감) 1,438	4,031	0.7%	
	커뮤니티센터	2,000	-	2,000	0.3%	
	공공청사	300	-	300	0.1%	

※ 존치관리지역이 포함된 수치임

※ 면적 증감내역

- 택 지 : 주거용지(5구역 17,645㎡ 증가), 복합용지(2구역 97㎡ 증가, 5구역 17,700㎡ 감소), 종교용지(5구역 1,330㎡ 감소)

- 기반시설 : 도로(2구역 452㎡ 증가, 5구역 8,136㎡ 증가), 철도(2구역 166㎡ 감소), 공원(4구역 1,135㎡ 증가, 5구역 4,209㎡ 감소), 녹지(2구역 101㎡ 증가, 5구역 2,237㎡ 감소) 미래용지(4구역 1,135㎡ 감소, 5구역 303㎡ 감소)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2)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변경)

구 분	주택수(세대)			구성비 (%)	인구수(인)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866	증)98	6,964	100.00%	17,875	증) 320	18,195	100.00%	
촉진 구역	소계	5,199	감)1,669	3,530	50.69%	13,517	감)4,338	9,179	50.45%
	40㎡이하	1,059	감) 556	503	7.22%	2,753	감)1,445	1,308	7.19%
	40~60㎡	1,366	감) 460	906	13.01%	3,552	감)1,196	2,356	12.95%
	60~85㎡	1,970	감) 497	1,473	21.15%	5,122	감)1,292	3,830	21.05%
	85㎡초과	804	감) 156	648	9.30%	2,090	감) 405	1,685	9.26%
존치관리구역소계	1667	증)1,767	3,434	49.31%	4,358	증)4,658	9,016	49.55%	

※ 증감내역

- 세대수 : 2구역 42세대 증가, 5구역 56세대 증가
- 인구수 : 2구역 110인 증가, 5구역 210인 증가

3) 임대주택 건설 등 거주 대책(변경)

구 분	계				분 양				임 대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소계	40㎡이하	40~60㎡	60~85㎡	
계	기정	5,199	2,425	1,970	804	4,253	1,679	1,770	804	946	516	230	200
	변경	감)1,669	감)1,016	감)497	감)156	감)1,552	감)1,003	감)393	감)156	감)117	감)13	-	감)104
	변경후	3,530	1,409	1,473	648	2,701	676	1,377	648	829	503	230	96
	비율	67.89%	27.10%	28.33%	12.46%	51.95%	13.00%	26.49%	12.46%	15.94%	9.67%	4.42%	1.8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정	797	556	241	-	660	419	241		137	101	36	-
	비율	100%	69.76%	30.24%	0.00%	82.81%	52.57%	30.24%	0.00%	17.19%	12.67%	4.52%	0.00%
도시개발사업	기정	1,749	734	768	247	1,153	138	768	247	596	402	194	-
	비율	100%	41.97%	43.91%	14.12%	65.92%	7.89%	43.91%	14.12%	34.08%	22.98%	11.09%	0.00%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정	2,653	1,135	961	557	2,440	1,122	761	557	213	13	-	200
	변경	감)1,669	감)1,016	감)497	감)156	감)1,552	감)1,003	감)393	감)156	감)117	감)13	-	감)104
	변경후	984	119	464	401	888	119	368	401	96	-	-	96
	비율	100%	12.10%	47.15%	40.75%	90.24%	12.09%	37.40%	40.75%	9.76%	0.00%	0.00%	9.76%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면적	582,738		583,222	100.0%		
기 반 시 설	소 계	287,535	증)1,774	289,309	49.61%	
	도 로	90,570	증)8,588	99,158	17.00%	2구역 가감속차로 추가 설치 증) 452m ² 5구역 폐지로 기반시설환원 증)8,136m ²
	철 도	33,336	감) 166	33,170	5.69%	2구역으로 포함되는 철도면적 감)166m ²
	주 차 장	(3,525)	-	(3,525)	9.87%	6-2구역 공원과 중복결정
	공 원	60,623	감)3,074	57,549		4구역 미래용지에서 변경 증)1,135m ² 5구역 공원 폐지 감소 증)8,136m ²
	녹 지	13,378	감)2,136	11,242	1.93%	5구역 녹지 폐지 감소 감)2,237m ² 2구역 증가 녹지면적 증) 101m ²
	학 교	81,859	-	81,859	14.04%	
	공 공 청 사	300	-	300	0.05%	
	커뮤니티센터	2,000	-	2,000	0.34%	
	미 래 용 지	5,469	감)1,438	4,031	0.69%	4구역 근린공원으로 변경 감)1,135m ²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개수			면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녹 지	계	18	감)3	15	74,001	감)5,210	68,791	
	근린공원	1	-	1	31,633	증)1,135	32,768	4구역 미래용지 일부 근린공원으로 변경 증)1,135m ²
	어린이공원	2	감)1	1	6,582	감)2,656	3,926	5구역 폐지로 인한 환원
	소공원	8	감)1	7	17,962	감)1,553	16,409	5구역 폐지로 인한 환원 (면적감소)
	문화공원	1	-	1	4,446	0	4,446	
	완충녹지	2	-	2	5,224	증) 289	5,513	5구역 폐지 증)188m ² 2구역 증가 증)101m ²
	경관녹지	3	-	3	5,729	0	5,729	
	연결녹지	1	감)1	0	2,425	감)2,425	0	5구역 폐지로 인한 환원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6) 교통계획

○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2장 제7절 교통계획)에 명시

7) 경관계획

○ 변경사항 없음

8)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사항 없음

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사항(변경)

가) 촉진구역(변경)

구분	구역명		사업방식	면 적(㎡)	사업방식 결정사유
기정	1구역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035	◦ 공업기능 상실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 조성
기정		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0,886	
기정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5,637	◦ 국도6호선변 복합용지 개발을 통한 역세권 형성
변경				6,287	
기정	4구역		도시개발사업	142,457	◦ 미집행 시설 해소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지 조성
폐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6,676	◦ 주민의견조사결과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재정비촉진 사업의 계속 추진을 원하지 아니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존치관리구역)
기정	6구역	6-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4,468	◦ 도농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기정		6-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64,917	
기정	7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41,044	◦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나) 존치관리구역(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존치1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26-6 일원	6,549	한신아파트
기정	존치2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117-28 일원	10,716	마제스타워 주변지역
기정	존치3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106 일원	85,691	학교밀집지역
기정	존치4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336-27 일원	1,589	빙그레앞 연도형 상가
기정	존치6구역	남양주시 가운동 617-71 일원	1,595	가운연립주택
기정	존치7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285-2 일원	521	철도시설 및 완충녹지
변경			355	
기정	존치8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306-30 일원	25,966	삼성전자 물류센터 주변지역
기정	존치9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298-1일원	65,354	제일아파트 ~ 대영그린빌라 인근
신설	존치10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39-3일원	66,676	부영프라자 ~ 동화교회 인근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다) 존치시설구역(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582,738	증) 484	583,222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453,382	감) 2,189	451,193	77.8%	77.4%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9,597	증) 63,981	193,578	22.2%	33.2%	
	제2종일반 주거지역	197,882	감) 46,419	151,463	34.0%	26.0%	
	제3종일반 주거지역	6,644	-	6,644	1.1%	1.1%	
	준주거지역	119,259	감) 19,751	99,508	20.5%	17.1%	
상업지역	소 계	38,249	-	38,249	6.6%	6.6%	
	일반상업지역	38,249	-	38,249	6.6%	6.6%	
공업지역	소 계	24,315	-	24,315	4.2%	4.2%	
	준공업지역	24,315	-	24,315	4.2%	4.2%	
녹지지역	소 계	66,792	증) 2,673	69,465	11.5%	11.9%	
	자연녹지지역	66,792	증) 2,673	69,465	11.5%	11.9%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시장)가 별도 결정·고시함.

가) 1-1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나) 1-3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다) 2구역(도시환경정비)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5,637	증) 650	6,287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4,207	증) 136	4,343	74.6%	69.1%
	준 주 거	4,207	증) 136	4,343	74.6%	69.1%
녹지지역	소 계	1,430	증) 514	1,944	25.4%	30.9%
	자연녹지지역	1,430	증) 514	1,944	25.4%	30.9%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라) 4구역(도시개발사업)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142,457	-	142,457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112,087	감) 1,135	110,952	78.7%	77.9%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087	감) 1,135	110,952	78.7%	77.9%
녹지지역	소 계	30,370	증) 1,135	31,505	21.3%	22.1%
	자연녹지지역	30,370	증) 1,135	31,505	21.3%	22.1%

마) 5구역(도시환경정비)

○ 폐지(용도지역 환원)

◦ 2013. 5. 20. ~ 6. 28. 5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 주민의견조사결과 반대비율이 29.54%로 조사되어 존치관리구역(존치10)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환원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66,676	-	66,676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65,589	감) 1,190	64,399	98.4%	96.6%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63,981	63,981	0.0%	96.0%
	제2종일반주거지역	45,284	감) 45,284	-	67.9%	0.0%
	준 주 거	20,305	감) 19,887	418	30.5%	0.6%
녹지지역	소 계	1,087	증) 1,190	2,277	1.6%	3.4%
	자연녹지지역	1,087	증) 1,190	2,277	1.6%	3.4%

바) 6-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사) 6-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아) 7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사항 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변경)계획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가)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건폐율(%)	기준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기정	1구역	1-1구역	16,035	60	200.0	255.0	공동주택					
기정		1-3구역						20,886	60	210.0	280.0	공동주택
기정	2구역		5,637	70	350.0	471.0	주상복합					
변경								6,287	70	350.0	500.0	
기정	4구역		142,457	60	180.0	200.0	공동주택(임대주택)					
				60	200.0	255.0	공동주택					
폐지	5구역		66,676	60	200.0	257.0	공동주택					
				70	350.0	430.0	주상복합					
기정	6구역	6-1구역	24,468	80	400.0	600.0(750.0)	상업(호텔계획시)					
기정		준주거						64,917	70	350.0	455.0	주상복합
		6-2구역							상업	80	400.0	600.0(750.0)
기정	7구역		41,044	70	350.0	450.0	도시계획시설 (환승센터+지원시설)					

- 주1) 6-1구역 / 6-2구역의 인센티브 용적률은 지하 연결광장 확보(65%) 및 지상부 리빙루프 설치(20%), 호텔계획시(150%)에 대한 용적률임
- 주2)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로서, 계획용적률 150% 범위내에서, 최소객실수 80실이상, 용적률 100%이상 확보하여야 함
- 주3) 1-3구역은 용적율의 10%범위 이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남양주시 고시 제2012-271호(2012.12.20.))
- 주4) 건폐율, 용적률은 “이하”로 적용함.

나) 높이계획

변경사항 없음

다) 기타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

변경사항 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1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부담률(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계획기반시설 ①	현황국공유지 ②	유상매입시설 ③	존치기반시설	순부담면적(㎡) ①-(②-③)	순부담률(%)
기정	1구역	1-1구역	16,035	3,061	1,065	-	917	1,996	13.20
기정		1-3구역	20,886	6,097	2,985	802	2,219	3,914	20.97
기정	2구역		5,637	1,971	1,426	300	739	845	17.25
변경			6,287	2,524	1,919	571	1,191	1,176	23.08
기정	4구역		142,457	62,196	30,115	742	24,388	32,823	29.15
변경			142,457	63,338	30,641	742	24,388	33,439	30.03
폐지	5구역		66,676	17,458	13,940	2,619	5,428	6,137	10.02
기정	6구역	6-1구역	24,468	13,298	10,193	764	8,432	3,869	27.35
기정		6-2구역	64,917	27,743	20,044	2,491	14,119	10,190	21.47
기정	7구역		41,044	41,044	-	-	-	1,509	21.19

주) 7구역 순부담률 = (기반시설 중 완충녹지 + 파출소) / (민간사유지 + 철도공사 소유 필지)

주) 기반시설 부담면적 중 건축면적 및 공공보행데크 면적은 제외

주)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구역외 사업자 부담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나) 촉진구역 기반시설부지 분담주체

○ 변경사항 없음

14)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변경)

구분	사업시기	구역수			대상지역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단계	2011년	5	-	5	1-3구역, 2구역, 4구역, 6-1구역, 6-2구역	
2단계	2013년	3	감) 1	2	1-1구역, 7구역	5구역 폐지

나) 단계별 이주계획(변경없음)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특성화계획)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16) 재정비촉진구역별정비계획

가) 1-1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나) 1-3구역(주택재개발)

○ 변경사항 없음

다) 2구역(도시환경정비)

(1)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2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	5,637	증)650	6,287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계		5,637	증) 650	6,287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971	증) 553	2,524	40.1	
	도 로	901	증) 452	1,353	21.5	
	녹 지	1,070	증) 101	1,171	18.6	
택지 (획지)	소 계	3,666	증) 97	3,763	59.8	
	2-1-a	3,666	증) 97	3,763	59.8	복합용지

(나)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2구역	5,637	-	-	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	6	-	-	6	-	
변경	2구역	6,287	-	-	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	6	-	-	6	-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2 구역	5,637	6,287	2-1 -a	3,666	3,763	남양주시 도농동 133 일원	주상복합	70	471	50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구분	합계	분양 (㎡)					임대 (㎡)				
				소계	40이하	60이하	85이하	85초과	소계	40이하	60이하	85이하	85초과
		세대수	기정	135	135	-	-	135	-	-	-	-	-
			증·감	증)42	증)42			증)119	감)77	-	-	-	-
변경	177		177			119	58	-	-	-	-		
비율(%)		100.0	100.0	-	67.23	32.77	-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립비율 - 해당사항 없음											
		○주거비율: 90%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지급도농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최고높이 및 건축배치 건축법령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정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적률(주상복합) 변경전(471%) → 변경후(500%이하)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2012.06.15)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업시행시 건축법등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설치함.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대한 검토결과	비고
			현황세대	증·감	계획세대		
도시환경정비사업	1단계 (20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행자	27	증)150	177	-	사업시기는 주변구역 추진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 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진건3	7	28	보조간 선도로	1,001 (40)	대로 진건3-1	도농동 대로1-1	일반 도로	-	일부편입
기정	소로	도농2	10	8	국지 도로	24,767 (57)	도농동 대로 1-1	도농동 129-4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기정	대로	1	1	35~ 56	주간선 도로	24,767 (-)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변경	대로	1	1	35~ 56	주간선 도로	24,767 (106)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가감속 차로 추가설치

※ ()안의 연장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 2구역 구간의 연장임.

○ 철 도(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종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본선)	도농동 도시계획구역계 (완속천철교)	조안면 진중리 586	도농·삼패·덕소 도곡·팔당 능내정거장	19,651 (10)	565,810 (270)	건고194호 ('97.6.12)	일부편입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본선)	도농동 도시계획구역계 (완속천철교)	조안면 진중리 586	도농·삼패·덕소 도곡·팔당 능내정거장	19,651 (0)	565,326 (0)	건고194호 ('97.6.12)	용도폐지 감)484

※ ()안의 연장 및 면적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2구역)에 포함된 연장 및 면적임.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변경 - 면적 : 565,810㎡ → 565,326㎡(감 484)	2구역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국공유지(철도부지) 추가편입 및 시설결정 변경

○ 녹 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도농동 46-2철 일원	5,224 (1,070)	증289 (증 101)	5,513 (1,171)	경고386호 (’76.12.18)	

※ 5구역 해제로 인한 완충녹지 환원 면적 증)188㎡을 반영한 것으로 ()안의 면적은 재정비촉진지구내 2구역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 변경 - 면적 : 1,070㎡ → 1,171㎡	완충녹지 정형화를 위한 철도부지 추가편입

라) 4구역(도시개발사업)

(1)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4구역	남양주시 도농동 133일원	142,457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42,457	-	142,457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70,051	-	70,051	49.2%	
	도로	8,805	-	8,805	6.2%	
	공원	34,296	증)1,135	35,431	24.9%	
	경관녹지	5,705	-	5,705	4.0%	
	학교	14,079	-	14,079	9.9%	
	미래용지	5,166	감)1,135	4,031	2.8%	
	커뮤니티센터 (4-1-e)	2,000	-	2,000	1.4%	
택지 (획지)	소계	72,406	-	72,406	50.8%	
	4-1-a, 4-1-b, 4-1-c, 4-1-d	70,473	-	70,473	49.5%	공동주택 (4-1-a, 4-1-c 일부 : 임대주택)
	4-1-f, 4-1-g, 4-1-h, 4-1-i	1,933	-	1,933	1.4%	종교용지

(나)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사업시행시 건축법등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여 설치함.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사항 없음

(마)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 로(변경없음)

○ 녹 지(변경없음)

○ 공 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도농동 산11입 일원	30,370	증)1,135	31,505	경고243호 (’95.6.30)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근린공원	▶ 변경 - 면적 : 30,370㎡ → 31,505㎡	5구역 해제로 인한 부족한 공원녹지면적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맞도록 추가 확보

○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도농동 475-10답 일원	5,166	감)1,135	4,031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변경 - 면적 : 5,166㎡ → 4,031㎡	근린공원 추가확보 및 부지정형화를 위하여 공공공지(미래용지) 일부 축소

마) 5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폐지

바) 6-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사) 6-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사항 없음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권자(시장)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지 구 명	유형	위치	면 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중심 지형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동, 가운동일원	582,738	증)484	583,222	기성시가지내 노후·불량 밀집주거지역 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재정비를 포함한 복합적 개발을 통해 지금동, 도 농동 일대의 동일 생활권을 체계적이 고 종합적인 개발

※ 남양주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합 계		582,738	증) 484	583,222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453,382	감) 2,189	451,193	77.8%	77.4%	
	제1종일반 주거지역	129,597	증) 63,981	193,578	22.2%	33.2%	
	제2종일반 주거지역	197,882	감) 46,419	151,463	34.0%	26.0%	
	제3종일반 주거지역	6,644	-	6,644	1.1%	1.1%	
	준주거지역	119,259	감) 19,751	99,508	20.5%	17.1%	
상업지역	소 계	38,249	-	38,249	6.6%	6.6%	
	일반상업지역	38,249	-	38,249	6.6%	6.6%	
공업지역	소 계	24,315	-	24,315	4.2%	4.2%	
	준공업지역	24,315	-	24,315	4.2%	4.2%	
녹지지역	소 계	66,792	증) 2,673	69,465	11.5%	11.8%	
	자연녹지지역	66,792	증) 2,673	69,465	11.5%	11.8%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1	35~56	주간선 도로	24,767 (1,008)	도농동 255	화도읍 구암리 산28-4	일반 도로	도농,금 곡,호평 동	경고233호 (78.5.25)	
기정	대로	진건3	7	28	보조간선 도로	328	대로 진건3-1	도농동 중로1-302	일반 도로	-	경고 2011-132 (11.5.23)	
기정	중로	1	302	20~28	보조간선 도로	673	대로 진건3-5	도농동 대로1-1	일반 도로	-	국토부28호 (95.6.5)	
기정	소로	도농1	1	10	국지도로	42	도농동 중로 3-302	도농동 중로 3-305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중로	3	304	12~18	국지도로	75	도농동 소로1-2	도농동 소로 1-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도농1	2	10~12	국지도로	113	도농동 중로1-302	도농동 중로3-304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중로	3	305	12~13	집산도로	393 (116)	도농동 중로 3-304	도농동 중로 1-302	일반 도로	-	남양주15호 (05.1.24)	
기정	중로	2	C	15~18	집산도로	401	도농동 중로 1-10	도농동 대로 3-7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C	15	집산도로	102	도농동 중로 1-10	도농동 2-104 소2-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101	10	국지도로	160	도농동 중로 1-10	도농동 소로2-1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소로	도농2	1	8	국지도로	299	도농동 2-104 중2-C	도농동 중로 1-302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소로	도농3	1	6	국지도로	200	도농동 299-28	도농동 340-19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소로	도농3	2	6	국지도로	205	도농동 중로 1-302	도농동 소로 2-1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중로	진건1	9	20	보조간선 도로	427 (378)	대로 진건3-5	지금동 중1-11	일반 도로	-	-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10	20~25	보조간선 도로	2,648 (336)	가운동 545-3 대로 1-12	대로 진건3-5	일반 도로	부영 APT	-	
기정	중로	1	11	20	보조간선 도로	610 (27)	지금동 444-8 대로 1-1	지금동 410-3 중로 3-3	일반 도로	부영 APT	남양주47호 (‘00.7.29)	
기정	중로	2	A	15~23	집산도로	450	도농동 53-1 대로 1-1	도농동 25-61 중로 2-C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1	311	20	보조간선도 로	207	도농동 53-1 대로 1-1	도농동 1-17 중로1-10			남양주100호 (‘06.6.29)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272 (108)	도농동 323-4	도농동 336-23	일반 도로	-	남양주30호 (‘00.5.6)	
기정	중로	3	A	6~15	집산도로	260	도농동 대로 1-1	가운동 중로 1-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B	6	국지도로	70	가운동 617-73	도농동 중로3-A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B	12	국지도로	116	도농동 대로 1-1	가운동 113-3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도농3	20	6	국지도로	314	지금동97-2 소로 도농3-17	지금동 103-36	일반 도로	-	경고223호 (‘78.5.25)	
기정	소로	2	A	6~9	국지도로	54	도농동 336-45	도농동 중로 3-2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C	10	국지도로	88	소로 도농1-4	도농동 36-51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도농2	5	8	국지 도로	88	소로 도농 1-4	소로 도농3-4	일반 도로	경고500 7호 (‘06.1.1 6)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도농1	4	10	국지 도로	170 (5)	중로 3-310	소로 1-C	일반 도로	-	경고5007로 (’06.1.16)	
기정	소로	도농2	10	8	국지 도로	57	도농동 132-5	도농동 129-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도농3	3	6	국지 도로	75	도농동 소로 도농2-1	도농동 29-28	일반 도로		경고479호 (’82.12.30)	
신설	소로	도농3	4	6	국지 도로	149	도농동 소로 도농2-5	도농동 소로 도농3-3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신설	소로	도농3	5	6	국지 도로	60	도농동 소로 도농3-7	도농동 소로 도농3-4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신설	소로	도농3	6	6	국지 도로	182	도농동 소로 도농3-8	소로 도농2-5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신설	소로	도농3	7	6	국지 도로	275	도농동 중로1-10	도농동 소로 도농3-6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신설	소로	도농3	8	6	국지 도로	200	도농동 중로1-10	도농동 소로 도농3-7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신설	소로	도농3	9	6	국지 도로	85	도농동 소로 도농3-7	도농동 소로 도농3-8	일반 도로		경고223호 (’78.5.25)	
신설	소로	도농3	21	4	특수 도로	54	도농동 49-35	도농동 294-75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22	4	특수 도로	48	도농동 65-1	도농동 65-1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23	4	특수 도로	64	도농동 2-3	도농동 68-2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도농3	24	2	특수 도로	62	도농동 49-31	도농동 47-38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25	2	특수 도로	80	도농동 49-60	도농동 47-14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26	2	특수 도로	74	도농동 47-2	도농동 47-6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49호 (‘94.12.7)	
신설	소로	도농3	27	2	특수 도로	59	도농동 45-14	도농동 46-8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28	2	특수 도로	71	도농동 45-13	도농동 44-14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29	2	특수 도로	38	도농동 35-14	도농동 36-43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30	2	특수 도로	12	도농동 63-70	도농동 41-4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49호 (‘94.10.16)	
신설	소로	도농3	31	2	특수 도로	51	도농동 65-1	도농동 39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32	2	특수 도로	82	도농동 38-1	도농동 65-1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33	2	특수 도로	31	도농동 45-31	도농동 45-28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34	2	특수 도로	35	도농동 45-32	도농동 45-34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신설	소로	도농3	35	2	특수 도로	45	도농동 37-3	도농동 36-1	보행자 전용도로		미금55호 (‘94.12.28)	

주) ()안의 연장은 금회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포함된 연장임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A	중로 1-311	▶ 변경 - 연장:(기정)450m→(변경)207m - 폭원:(기정)15~23m→(변경)20m	<p>주민의견조사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5구역을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촉진계획결정 이전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환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p>
중로 2-C	소로 1-101	▶ 변경 - 연장:(기정)102m→(변경)160m - 폭원:(기정)15m→(변경)10m	
소로 1-C	소로 도농2-5	▶ 변경 - 폭원:(기정)10m→(변경)8m	
-	소로 도농3	▶ 신설 - 연장:75m - 폭원:6m	
-	소로 도농3-4	▶ 신설 - 연장:149m - 폭원:6m	
-	소로 도농3-5	▶ 신설 - 연장:60m - 폭원:6m	
-	소로 도농3-6	▶ 신설 - 연장:182m - 폭원:6m	
-	소로 도농3-7	▶ 신설 - 연장:275m - 폭원:6m	
-	소로 도농3-8	▶ 신설 - 연장:200m - 폭원:6m	
-	소로 도농3-9	▶ 신설 - 연장:85m - 폭원:6m	
-	소로 도농3-21	▶ 신설 - 연장:54m - 폭원:4m	
-	소로 도농3-22	▶ 신설 - 연장:48m - 폭원:4m	
-	소로 도농3-23	▶ 신설 - 연장:64m - 폭원:4m	
-	소로 도농3-24	▶ 신설 - 연장:62m - 폭원:2m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도농3-25	▶ 신설 - 연장:80m - 폭원:2m	주민의견조사결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5구역을 존치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촉진계획결정 이전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환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2
-	소로 도농3-26	▶ 신설 - 연장:74m - 폭원:2m	
-	소로 도농3-27	▶ 신설 - 연장:59m - 폭원:2m	
-	소로 도농3-28	▶ 신설 - 연장:71m - 폭원:2m	
-	소로 도농3-29	▶ 신설 - 연장:38m - 폭원:2m	
-	소로 도농3-30	▶ 신설 - 연장:12m - 폭원:2m	
-	소로 도농3-31	▶ 신설 - 연장:51m - 폭원:2m	
-	소로 도농3-32	▶ 신설 - 연장:82m - 폭원:2m	
-	소로 도농3-33	▶ 신설 - 연장:31m - 폭원:2m	
-	소로 도농3-34	▶ 신설 - 연장:35m - 폭원:2m	
-	소로 도농3-35	▶ 신설 - 연장:45m - 폭원:2m	

(2) 주차장

○ 변경사항 없음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3) 철 도(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m ²)	최종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본선)	도농동 도시계획구역계 (완속천철교)	조안면 진중리 586	도농·삼패·덕소 도곡·팔당 능내정거장	19,651 (10)	565,810 (270)	건고194호 (‘97.6.12)	일부편입
변경	2	철도	일반철도 (중앙선본선)	도농동 도시계획구역계 (완속천철교)	조안면 진중리 586	도농·삼패·덕소 도곡·팔당 능내정거장	19,651 (0)	565,326 (0)	건고194호 (‘97.6.12)	용도폐지 감)484
기정	2-1	철도	일반철도 (도농정거장)	도농동 59-2	지금동 444-2	-	760	45,786 (29,263)	건고194호 (‘97.6.12)	도농역

※ ()안의 연장 및 면적은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연장 및 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변경 - 면적 : 565,810m ² → 565,326m ² (감 484)	2구역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철도부지 추가매입 및 시설결정 변경

(4) 녹 지

○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378	감) 2,136	11,242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도농동 46-2철 일원	4,015	증) 289	4,304	경고386호 (‘76.12.18)	일부편입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지금동 130-7답 일원	1,209	0	1,209	-	
기정	301	녹지	경관녹지	지금동 129-100잡 일원	24	0	24	경고5091호 (‘05.9.5)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지금동 산8-4임 일원	2,923	0	2,923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지금동 532-2도 일원	2,782	0	2,782	-	
폐지	1	녹지	연결녹지	도농동 46-8대 일원	2,425	감) 2,425	0	-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 녹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결정)사유
1	완충녹지	▶구역편입면적 변경 ▶철도부지 구역 내 편입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환원되는 완충녹지 면적 변경 · 2구역 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철도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내 2구역에 편입
1	연결녹지	▶폐지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폐지

(5)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0,623	감) 3,074	57,549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도농동 산11입 일원	31,633	증) 1,135	32,768	경고243호 ('95.6.30)	4구역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지금동 528-3대 일원	3,926	-	3,926	-	
변경	4	공원	어린이공원	도농동 73-1대 일원	2,656	감) 2,656	-	-	5구역 폐지
변경	126	공원	소공원	도농동 1-16대 일원	1,087	감) 457	630	남양주136호 ('10.6.29)	5구역 폐지 환원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도농동 53-17대 일원	4,446	-	4,446	남양주136호 ('10.6.29)	커뮤니티센터
기정	1	공원	소공원	도농동 323-5장 일원	375	-	375	-	
기정	2	공원	소공원	도농동 336-26대 일원	1,231	-	1,231	-	
기정	3	공원	소공원	도농동 265-27 일원	1,123	-	1,123	-	
변경	4	공원	소공원	도농동 34-4대 일원	1,096	감) 1096	-	-	5구역 폐지
기정	5	공원	소공원	가운동 619-20대 일원	3,163	-	3,163	-	
기정	6	공원	소공원	가운동 617-8대 일원	5,833	-	5,833	-	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7	공원	소공원	도농동 111-6대 일원	4,054	-	4,054	-	

남 양 주 시 보

제1317호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어린이공원	▶ 폐지 · 면적 : 2,656㎡	·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폐지
126	소공원	▶ 환원 · 기정 : 1,087㎡ → 변경 : 630㎡	·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공원 환원
4	소공원	▶ 폐지 · 면적 : 1,096㎡	·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폐지

(6)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공지	미래 공공용지	도농동 29-16잡 일원	303	감) 303	-	-	
변경	2	공공공지	미래 공공용지	도농동 475-10답 일원	5,166	감)1,135	4,031	-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 폐지 · 면적 : 303㎡	·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폐지
2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 변경 · 기정 : 5,166㎡ → 변경 : 4,031㎡	· 재정비촉진지구내 5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맞도록 근린공원 추가확보 및 부지정형화를 위하여 공공공지(미래용지)일부축소

(7) 공공청사

○ 변경사항 없음

(8) 학교

○ 변경사항 없음

(9) 문화시설

○ 변경사항 없음

라)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관련사항은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따름

마)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